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통교부세 교부기준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 반영〉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05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통교부세 교부기준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 반영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5. 11.
3. 회부연월일 : 2026. 5.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하는 행정, 복지 등의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보통교부세 교부기준에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 반영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교부기준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보정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¹⁾ ① .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 3. (현행과 같음)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신 설>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

현 행	개 정 안
	구감소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보통교부세의 교부기준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①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매년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기준재정수입액**(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²⁾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기준재정수요액**(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산

1) 「지방교부세법」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나 외딴곳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위비용의 획일적 적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이 매우 불합리하게 책정된 경우

2) 「지방교부세법」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① 기준재정수입액은 기준세율로 산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수입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기준세율로 산정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정한 금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함³⁾).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⁴⁾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 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임.

(2) 검토의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⁵⁾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해 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지정하여 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으로서, 현재는 전국 89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3)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4) 동법 시행령상 측정항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1.일반행정비, 2.문화환경비, 3. 사회복지비, 4. 지역경제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현행은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사항을 법률에서 i)섬·외딴곳의 특수성, ii)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간의 균형 잡힌 발전 촉진, iii)그 밖의 사유 등으로 대강을 정하고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 타목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재정수요액 보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i) 현재 저출생, 인구감소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 ii) 「지방교부세법」의 목적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4 인구감소지역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

유형별 측정항목	산정방식
1. 지역균형	
타. 인구감소지역 (시·군)	• $(\text{인구감소지수}^*/100)^2 \times [(\text{지방자치단체 면적} \times \text{시·군 행정구역 면적 } 1\text{천m}^2\text{당 평균 지역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times 50\%$ * 인구감소지수 : 8개 지표(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수 보정수요 측정항목 중 하나인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